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7호 중 “분쟁 해결”을 “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소송사건의 번호(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)

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(受訴法院)에 알려야 한다.

1.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(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)

2. 분쟁조정 신청일

3.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

4. 소송사건의 번호

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

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.

④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.

1.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
2.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 절차의 종료 사유
3. 조정의 결과(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)
4. 소송사건의 번호

⑤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제2항·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
별표 2 제2호나목(3) 중 “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”을 “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서에 포함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(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(4)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물품을 강제하도록 변경하거나 가격, 수량, 품질,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칠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

제19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) 별표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의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)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) 법 제11조제2항제12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~ 6. (생략) 7.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<u>분쟁 해결</u> 절차에 관한 사항 8.·9. (생략)	제12조(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9조(분쟁조정의 신청)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청서></u> ② (생략)	7. ----- ----- <u>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</u> ----- ----- 8.·9.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소제기 등의 통지) (생략)	제19조(분쟁조정의 신청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소송사건의 번호(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)</u> ② (현행과 같음)
	제27조(소제기 등의 통지) ① (현

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(受訴法院)에 알려야 한다.

1.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(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)

2. 분쟁조정 신청일

3.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

4. 소송사건의 번호

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.

④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제1항

<신 설>

[별표 2] 2. 구속조건부 거래
가. (생략)
나. 거래상대방의 구속
(1)·(2). (생략)
(3)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
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
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

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
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
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
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
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
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
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
원에 알려야 한다.

1.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
2.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
조정 절차의 종료 사유
3. 조정의 결과(조정이 성립된
경우로 한정한다)
4. 소송사건의 번호
- ⑤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제2
항·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
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
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
다.

[별표 2] 2. 구속조건부 거래
가. (현행과 같음)
나. 거래상대방의 구속
(1)·(2). (현행과 같음)
(3) -----

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

<신 설>

<신 설>

-----가
맹점사업자와의 계약서에 포함
할 것

(4)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
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
강제하도록 변경하거나 가격,
수량, 품질, 거래상대방 등 거래
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
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
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
를 거칠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6
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
다. 다만, 제19조제1항 및 제27
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
시행한다.

제2조(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
관한 적용례) 제12조제7호의
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
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
도 적용한다.

제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
관한 적용례) 별표2 제2호나목
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의
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.

	제4조(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)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.
--	---